

# 인천역 일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·계획수립(안) 및 도시계획시설(광장) 결정(변경) 입안(안) 열람·공고

인천역 일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·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(광장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1월 16일

인 천 광 역 시 장

1. 주요 입안내용

- 가. 용도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
  -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1	인천역 입지규제최소구역	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3-1번지 일원	-	증)24,693	24,693	

- 나. 도시계획시설(광장) 결정 및 변경
  - 광장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-	광장	교통광장	북성동1가 3-61	1,600	-	1,600	건고75-75 (1975.5.20)	형태변경
신설	1	광장	일반광장	북성동1가 4-4번지 일원	-	증)3,281	3,281		

2. 입지규제최소구역 특례사항

- 「주차장법」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완화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배제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, 제78조 등에 따른 건폐율, 용적률 상향 등

3.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4. 열람장소

-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책관(032-440-4504)
-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개발과(032-770-7518)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며,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